

2024년 제1회 서울남부교도소 한시임기제 7호(간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무부 서울남부교도소에서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울남부교도소장

1.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간호	한시임기제 7호	1명	서울남부교도소 의료과

2. 담당 예정 직무

- 수용자 진료 등 의료·보건 관련 업무
-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9147호)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3151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2998호)
- 「공무원임용규칙」 (인사혁신처예규 제147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법무부훈령 제1451호)

4. 응시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년(60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국내면허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 응시 면허증 미제출 등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시 결격처리

5. 신분 및 보수 수준

- 신 분 : 한시임기제7호 공무원
- 임용기간 : 임용일(2024. 5.월중 예정) ~ 2024. 8. 31.
 - ※ 채용일정 단축 및 연장 등 일정변경에 따라 임용일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무지 : 서울남부교도소 의료과
- 근무시간 : 주 35시간(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기관사정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별도 수당 지급
-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7호 봉급월액(2,255,700원) x 35/40시간 = 1,973,730원 상당

주 40시간 기준금액	주 35시간 환산금액
2,255,700원	1,973,730원 상당

- 수 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후 지급

○ 4대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3개월 이후 가입 불가

6.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면접시험을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질의·응답 후 평정

□ 최종합격자 기준 및 결정

○ 합격기준

- 평정요소 4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

- 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①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7.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2. 16.(금) ~ '24. 2. 26.(월)	'24. 2. 21.(화) ~ '24. 2. 26.(월)	'24. 3. 5.(화)	'24. 3. 11.(월)	'24. 3. 19.(화)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제출서류 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4. 2. 21.(화) ~ 2. 26.(월)

- 접수처 : 서울남부교도소 총무과(인사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 응시자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까지 인정하며, 결봉투에 “**한시임기제 공무원(간호직) 응시원서 재증**” 으로 표기
- ※ 본인(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직접 및 대리접수자는 반드시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접수의 경우) 지참
- ※ 등기우편 접수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반신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기관(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보관함]
- ※ 방문접수인 경우 접수 시 접수 당사자에게 응시표를 직접 교부하고,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신용 봉투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함 (미수신시 접수처로 확인 바람)

접수처 소재지(우편번호)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총무과	02)2083-0204

9.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1】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 응시수수료 : 7,000원 금액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부착(첨부)
 -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마감일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며,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 로 발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또는 모든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1통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 자필서명 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7】

- 자필서명 필수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 경력이 있는 해당자만 4대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경력, 재직증명서 상 기간과 동일)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8】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서식 9】

11.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서울남부교도소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재난의 발생 등에 경우 5일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자 제한 없음),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및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및 면허증은 국내면허증에 한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의사 철회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서식 10】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임용 확정된 응시자는 제외) 【별지서식11】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 '24. 3. 29.(금)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교도소 총무과 인사팀(02-2083-0204)

【붙임 1】

직무기술서(한시임기제 7호, 간호직)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부 서울남부교도소	의료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진료 등 의료·보건 관련 업무 ○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관련사항 등 교정행정에 관한 지식 ○ 수용자 의료처우 및 보건에 관한 지식 ○ 의료행정에 관한 지식
------	---

관련분야 : 간호	
응시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경력 3년 경과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에정자는 응시불가, 국내면허증에 한함 ※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해야 함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공고일인 '24. 2. 16.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별지서식 2>

응시원서

본인은 2024년도 제1회 한시임기제 7호(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울남부교도소장 귀하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인)
응시기관 (응시분야)	서울남부교도소 (한시임기제 7호, 간호직)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별도첨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한시임기제)채용시험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기관 (응시분야)	서울남부교도소 (한시임기제 7호, 간호직)
성명	(한글)	(한자)	
2024년 월 일 서울남부교도소 총무과장 ㉞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기관(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기관을 기재함
(예시) : 서울남부교도소(한시입기제7호, 간호)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예, 아니오 중 선택(√ 체크) 표시
6. 전자수입인지 : 7,000원(7급) 금액의 전자수입인지를 발급 후 별도 첨부함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경력채용 이력서 작성요령

▶ 『경력채용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하는 직급을 기재 (예 : 한시임기제7호)
- ③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 기재 (간호)
- ④ 응시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경력 3년 경과자 기재

나.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① 경력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경력 3년 경과한 자료 면허 취득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등 작성
- 제출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다.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자 확인란만 자필로 작성합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 직무수행 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 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4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가 불가함)

성명		응시분야 (직무등급)	간호 (한시임기제 7호)
생년월일			

본인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시행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남부교도소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서울남부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남부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